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폭염 및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제정조례안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는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 안 제5조 ~ 제7조는 실태조사 실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의 구체화로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에 따른 계획과 시행 방법 규정
 -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 검토 결과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자연재난으로 일어나는 인명피해 현황 중 원인별로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자료를 살펴보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지만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폭염은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직결될 정도로 예방의 중요함을 체감할 수 있음.
 - 우리구 양산대여소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폭염 예방대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의 경우 무더위쉼터를 191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 운영,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운영 기간의 연장, 그늘막 신규 추가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한파 예방 및 지원도 한파쉼터 확대 운영과, 온기텐트와 온열의자 등의 한파 저감시설 운영도 그 사례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온열의자의 경우 최근 버스정류장 57개소에 신규 설치 운영한 사례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여 폭염·한파에 모두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한 저감 시설로 보임. 앞서 기술한 내용으로 우리구가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결과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후속 절차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추진부서에서 재난도우미에게 상황 전파가 되어 각

취약계층에 안부확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의 전파 등도 현행 실시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우리구에서는 폭염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실외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폭염예방 구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한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을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행 대책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빠져있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에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동안 시행 중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사업의 확대와 지원 근거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한편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5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의자: 유승용, 차인영, 이순우
전승관 의원(4인)

1. 제안이유

폭염 및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 마.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및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운영
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